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20가단2073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하희진

피 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환

변론 종결 2020. 5. 13

판결 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00,000원, 원고 B에게 55,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원고 A은 50,900,000원, 원고 B는 55,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의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위 분담금을 돌려주기 로 약정하고, 2019. 10. 25. 원고 A에게 2020. 1. 30.까지 조합원 분담금 50,9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2019. 12. 11. 원고 B에게 2020. 3. 25.까지 조합원 분담금 55,3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주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0,900,000원, 원고 B에게 55,30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합원가입계약서 제8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대체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하는 조합원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원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의미는 신규대체 조합원의 가입을 받아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임의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조합원가입계약 당시 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환불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도로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이 사건 각 확인서에는 반환일자가 명시되어 있고, 반환에 있어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이 부가되었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확인서는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일자에 원고들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남신 향